

입법예고

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
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23. 12.

농림축산식품부

(원예산업과)

1. 개정이유

차 품평회 개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차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9462호, 2023.8.16. 공포, 2024.2.1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품평회 개최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(안 제5조의2 신설)
- 품평회 개최주기, 입상제품 홍보 및 활용 방안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품평회 관련 예산확보 필요
- 다. 합 의 : 해당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붙임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)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할 경우 일정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, 용기, 운송장,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차 품평회의 개최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)</u>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되,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차 품평회에서 입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할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그 입상 결과를 포장, 용기, 운송장,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차 품평회의 개최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